

수신 강원옥 외 94개소 귀하
(경유)

제목 다중이용업소 사이버·집합교육(보수)안내 알림(2분기)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.
2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소방 안전교육(보수)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일 정: 4월 중 상시
 - 나. 방 법: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※[붙임1] 참고
또는 강릉소방서 집합교육 [2025.4.23.(수) 14:00]
 - 다. 대 상: 영업주 및 종업원 ※종사자 전원 교육 이수 권장
 - 라. 내 용: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

※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

-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자
- 당해 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

3. 행정사항

- 가.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수시·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
- 나. 집합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당일 전까지 강릉소방서 민원실(033-610-8431)로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(안내문) 1부. 끝.

강릉소방서장



소방교 이성연 소방민원팀장 대결 2025. 3. 12. 예방안전과장 전결

협조자

시행 예방안전과-2998 (2025. 3. 12.) 접수

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64-28, (강릉소방서) (홍 / http://gn119.gwd.go.kr
제동)


전화번호 033-610-8430 팩스번호 033-610-8319 / lsy7126@korea.kr / 비공개(6)

대한민국 관광수도, 강원특별자치도!


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안내
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8조 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**받아야** 합니다. (보건교육, 위생교육,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과 별도)
-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부터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.
(예 : 2025년 1월 이수 → 2027년 1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)
- 사이버 교육 이수 방법

1.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(www.kfsi.or.kr) 접속 후 로그인(모바일도 가능)
※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(무료) 후 로그인
2. 기타교육 - 다중이용업 교육 ⇨ (신규/보수/수시) 중 **보수교육** 선택
※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해 상호와 주소를 꼭 기입해주세요.
3. 진도율 90% 이상 수료 ⇨ 강릉소방서로 이수 결과 통보
(담당자 ☎610-8431)



컴퓨터 접속화면



모바일 접속화면

-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영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